

집합투자기구 정정

□ 대상투자신탁 :

변경 전	현대중국으로뿐어나가는대한민국증권투자신탁1호[주식]
변경 후	현대튼튼대한민국증권투자신탁1호[주식]

□ 대상서류 : 투자설명서, 간이투자설명서, 집합투자규약

□ 변경내용 : 펀드명, 운용전략 변경, 법령개정사항 반영
및 최근 결산기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갱신

□ 변경대비표(간이투자설명서)

항 목	정정사유	정 정 전	정 정 후
표지	집합투자기구 명칭 변경	현대중국으로뿐어나가는대한민국 증권투자신탁1호[주식]	현대튼튼대한민국 증권투자신탁1호[주식]
투자결정시 유의사항	기업공시서식 변경	1. 투자판단시 증권신고서와 투자 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	1. 투자판단시 증권신고서와 투자 설명서를 참고할 수 있으며, 투자자는 간이투자설명서 대신 투자설명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
1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			
1. 투자목적	운용전략 변경으로 인한 문구 수정	이 투자신탁은 국내 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는 <u>집합투자기구입니다. 이 투자신탁은 신탁재산의 대부분을 중국 소비재 관련 국내 주식 등에 투자하여 투자대상 자산의 가치 상승에 따른 수익을 추구합니다.</u>	이 투자신탁은 국내 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<u>종합주가지수 대비 적정 위험을 부담하고, 중장기적으로 벤치마크 대비 초과 수익을 달성하고자 합니다</u>
2.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	운용전략 변경	<p>(1) 기본 운용전략</p> <p>- 글로벌 경제권역 중 가장 고성장이 예상되는 중국 내수시장에서 일정 매출을 발생시키고 있으며, 향후 지속적인 매출증가가 예상되는 국내 기업 주식에 집중투자함으로써 KOSPI 대비 초과 수익을 추구합니다.</p> <p>(2) 세부 운용전략</p> <p>■ 포트폴리오 구성 전략</p> <p>1)시장의 성장성, 경쟁강도, 기술력, 브랜드 인지도, 설비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, 향후 중국 내수시장 성장으로 장기적인 수혜가 기대되는 기업 중심으로 신탁재산의 60% 이상을 투자</p> <p>2) 성장 프리미엄이 가능한 종목 중 가시적인 성과가 기대되는 종목에 우선 투자</p> <p>3) 중국 소비시장의 패턴변화, 정책/제도의 변화에 맞춘 종목별 영향을 고려하여 탄력적</p>	<p>(1) 기본 운용전략</p> <p><u>지속성장이 가능한 장기성장주와 안정적인 비즈니스모델을 통해 건조한 이익창출이 가능한 기업에 투자함으로써 KOSPI 대비 초과수익을 추구합니다.</u></p> <p>(2) 세부 운용전략</p> <p>■ 포트폴리오 운용전략</p> <p>1)기본포트폴리오 : Top-down(하향식)과 Bottom-up(상향식)의 리서치에 근거한 분석을 통해 최적의 포트폴리오구성</p> <p>2)자산배분 : 시장위험과 관련된 체계적 위험발생시 적극적 자산배분전략(선물헷지전략 병행)</p> <p>3)섹터배분 : 경기상황과 업황을 고려하여 탄력적인 섹터비중조절을 통해 초과수익 기회 포착</p> <p>4)종목선택 : 업종대표주와 전략종목군(시장주도주,</p>

		<p>포트폴리오 조절</p> <p>■ 포트폴리오 선정기준</p> <p>1) 중국의 소비 대중화로 인한 수혜가 예상되는 기업 : 가전, 핸드폰, 자동차, 의류, 화장품 등</p> <p>2) 중국내 소비 지역 확산에 맞춰 유통망을 확보하고 있는 기업 : 유통, 홈쇼핑, 생활용품 등</p> <p>3) 중국 소비제품의 소재/중간재를 생산하는 기업 : 철강, 화학, 타이어 등</p> <p>4) 중국인의 해외여행 증가에 따른 수혜가 기대되는 기업 : 항공, 면세점, 백화점, 카지노 등</p> <p>자산 및 업종 배분 전략 :</p> <p>1) 중국의 경기 상황을 감안한 중국 관련 종목비중의 탄력적 비중조절을 통해 국면별 대응</p> <p>2) 시장위험과 관련된 체계적 위험 발생시 적극적 자산배분 전략 병행(선물 헷지 전략 병행)</p> <p>○ "중국 내수시장의 성장으로 수혜가 예상되는 종목" 이라 함은 중국 소비시장의 확대에 따른 수혜가 예상되는 재화와 서비스(가전제품, 자동차, 생활용품, 음식료, 게임, 유통, 운송 등)를 공급하는 국내기업의 주식을 말합니다.</p>	<p>저평가주)으로 초과수익 추구</p> <p>■ 세부 운용전략</p> <p>1) 포트폴리오는 업종대표 핵심종목군 70% 이상과 전략종목군 30% 이하를 통해 안정적인 초과성과 창출</p> <p>◆ Core(핵심) 종목군</p> <p>- 업종 대표 핵심 우량주로 중장기 투자용</p> <p>- 투자비중은 70% 이상</p> <p>- 펀드의 안정성을 목표로 구성</p> <p>◆ 전략 종목군</p> <p>- 유망 우량주로서 시장 주도주 및 테마주에 중·단기 매매이익 확보를 위해 투자</p> <p>- 투자비중은 30% 이하</p> <p>- 펀드의 초과 수익을 목표로 구성</p> <p>2) 구조적 성장이 가능한 장기 성장주를 발굴하여 장기투자로서의 의미있는 초과성과 추구</p> <p>* 장기성장주 : 매출액, 이익성장률이 시장 및 업종보다 높은 기업</p> <p>3) 시장의 비효율적 변동성을 활용한 Bottom Fishing 을 통해 초과수익 확대</p> <p>* 내재가치 대비 저평가 및 비이성적 급락 종목 투자 : 단기초과수익 기대</p>
5. 운용전문인력	작성기준일 변경으로 인한 운용자산 규모 업데이트		- 작성기준일 (2013.11.03)
6. 투자실적 추이	작성기준일 변경으로 인한 운용자산 규모 업데이트		- 작성기준일 (2013.11.03)
II. 매입·환매 관련 정보			
1. 보수 및 수수료	투자신탁 결산으로 인한 기타비용 등 업데이트	<p>나.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</p> <p>주3) 기타비용 및 증권거래비용 외에 증권신고서 제출에 따라 금융감독원에 납부하여야 하는 발행분담금 등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.</p>	<p>나.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</p> <p>[직전 회계연도 : 2012.09.27 ~ 2013.09.26]</p> <p>주3) 기타비용 및 증권거래비용 외에 증권신고서 제출에 따라 금융감독원에 납부하여야 하는 발행분담금(단, 2013년 8월 28일까지 발생분에 한함) 등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.</p>
III. 요약 재무정보			
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	최근 결산기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갱신		작성기준일 : 직전회계연도
확인서	기업공시서식 개정사항 반영	-	간이투자설명서 확인서 추가

□ 변경대비표(투자설명서)

항 목	정정사유	정 정 전	정 정 후
표지	집합투자기구 명칭 변경	현대 중국으로 뺀 어나가는 대한민국 증권투자신탁1호[주식]	현대 튼튼 대한민국 증권투자신탁1호[주식]
투자결정시 유의사항	기업공시서식 변경	1. 투자판단시 증권신고서와 투자 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	1. 투자판단시 증권신고서와 투자 설명서를 참고할 수 있으며, 투자자는 간이투자설명서 대신 투자설명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
제2부.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		
5. 운용전문인력	작성기준일 변경으로 인한 운용 자산 규모 업데이트		- 작성기준일 (2013.11.03)
7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	운용전략 변경으로 인한 문구 수정	이 투자신탁은 국내 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. 이 투자신탁은 신탁재산의 대부분을 중국 소비재 관련 국내 주식 등에 투자하여 투자대상 자산의 가치 상승에 따른 수익을 추구합니다.	이 투자신탁은 국내 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종합주가지수 대비 적정 위험을 부담하고, 중장기적으로 벤치마크 대비 초과 수익을 달성하고자 합니다
9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,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가. 투자 전략 및 위험관리	투자전략 변경	<p>(1) 기본 운용전략 - 글로벌 경제권역 중 가장 고성장이 예상되는 중국 내수시장에서 일정 매출을 발생시키고 있으며, 향후 지속적인 매출증가가 예상되는 국내 기업 주식에 집중투자함으로써 KOSPI 대비 초과 수익을 추구합니다.</p> <p>(2) 세부 운용전략 ■ 포트폴리오 구성 전략 1)시장의 성장성, 경쟁강도, 기술력, 브랜드 인지도, 설비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, 향후 중국 내수시장 성장으로 장기적인 수혜가 기대되는 기업 중심으로 신탁재산의 60% 이상을 투자 2) 성장 프리미엄이 가능한 종목 중 가시적인 성과가 기대되는 종목에 우선 투자 3) 중국 소비시장의 패턴변화, 정책/제도의 변화에 맞춘 종목별 영향을 고려하여 탄력적 포트폴리오 조절</p> <p>■ 포트폴리오 선정기준 1)중국의 소비 대중화로 인한 수혜가 예상되는 기업 : 가전, 한셋, 자동차, 의류, 화장품 등 2) 중국내 소비 지역 확산에 맞춰 유통망을 확보하고 있는 기업 : 유통, 홈쇼핑, 생활용품 등</p>	<p>(1) 기본 운용전략 지속성장이 가능한 장기성장주와 안정적인 비즈니스모델을 통해 견조한 이익창출이 가능한 기업에 투자함으로써 KOSPI 대비 초과수익을 추구합니다.</p> <p>(2) 세부 운용전략 ■ 포트폴리오 운용전략 1)기본포트폴리오 : Top-down(하향식)과 Bottom-up(상향식)의 리서치에 근거한 분석을 통해 최적의 포트폴리오구성 2)자산배분 : 시장위험과 관련된 체계적 위험발생시 적극적 자산배분전략(선물헤지전략 병행) 3)섹터배분 : 경기상황과 업황을 고려하여 탄력적인 섹터비중조절을 통해 초과수익 기회 포착 4)종목선택 : 업종대표주와 전략종목군(시장주도주, 저평가주)으로 초과수익 추구</p> <p>■ 세부 운용전략 1)포트폴리오는 업종대표 핵심종목군 70%이상과 전략종목군 30%이하를 통해 안정적 초과성과 창출 ◆ Core(핵심) 종목군 -업종 대표 핵심 우량주로 중장기</p>

		<p>3)중국 소비제품의 소재/중간재를 생산하는 기업 : 철강, 화학, 타이어 등</p> <p>4) 중국인의 해외여행 증가에 따른 수혜가 기대되는 기업 : 항공, 면세점, 백화점, 카지노 등</p> <p>자산 및 업종 배분 전략 :</p> <p>1) 중국의 경기 상황을 감안한 중국 관련 종목비중의 탄력적 비중조절을 통해 국면별 대응</p> <p>2) 시장위험과 관련된 체계적 위험 발생시 적극적 자산배분 전략 병행(선물 헷지 전략 병행)</p> <p>○ "중국 내수시장의 성장으로 수혜가 예상되는 종목" 이라 함은 중국 소비시장의 확대에 따른 수혜가 예상되는 재화와 서비스(가전제품, 자동차, 생활용품, 음식료, 게임, 유통, 운송 등)를 공급하는 국내기업의 주식을 말합니다.</p>	<p>투자용</p> <p>- 투자비중은 70% 이상</p> <p>- 펀드의 안정성을 목표로 구성</p> <p>◆ 전략 종목군</p> <p>- 유망 우량주로서 시장 주도주 및 테마주에 중·단기 매매이익 확보를 위해 투자</p> <p>- 투자비중은 30% 이하</p> <p>-펀드의 초과 수익을 목표로 구성</p> <p>2) 구조적 성장이 가능한 장기 성장주를 발굴하여 장기투자로 의미있는 초과성과 추구</p> <p>*장기성장주 : 매출액, 이익성장이 시장 및 업종보다 높은 기업</p> <p>3) 시장의 비효율적 변동성을 활용한 Bottom Fishing 을 통해 초과수익 확대</p> <p>* 내재가치 대비 저평가 및 비이성적 급락 종목 투자 : 단기초과수익 기대</p>
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	투자신탁 결산으로 인한 기타비용 등 업데이트	<p>나.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</p> <p>주3) 기타비용 및 증권거래비용 외에 증권신고서 제출에 따라 금융감독원에 납부하여야 하는 <u>발행분담금</u> 등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.</p>	<p>나.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</p> <p>[직전 회계연도 : 2012.09.27 ~ 2013.09.26]</p> <p>주3) 기타비용 및 증권거래비용 외에 증권신고서 제출에 따라 금융감독원에 납부하여야 하는 <u>발행분담금(단, 2013년 8월 28일까지 발생분에 한함)</u> 등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.</p>
제 3 부.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			
1. 재무정보	최근 결산기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갱신	<p>가. 요약재무정보</p> <p>나. 대차대조표</p> <p>다. 손익계산서</p>	<p>가. 요약재무정보</p> <p>나. 대차대조표</p> <p>다. 손익계산서</p> <p>-작성기준일:직전회계연도</p>
2. 연도별 설정 및 환매			-작성기준일:직전회계연도
3.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			- 작성기준일 (2013.11.03)
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			
1.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	작성기준일 변경으로 인한 업데이트	라. 운용자산 규모	<p>라. 운용자산 규모</p> <p>- 작성기준일 (2013.11.03)</p>
3. 기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	채권평가회사 명칭 변경 및 추가	<p>라. 채권평가회사에 관한 사항</p> <p>(1) 회사 개요</p> <p>- <u>나이스채권평가</u></p> <p>www.npricing.co.kr</p> <p>- <추가></p>	<p>라. 채권평가회사에 관한 사항</p> <p>(1) 회사 개요</p> <p>- <u>나이스피앤아이</u></p> <p>www.nicepni.com</p> <p>-<u>에프앤자산평가</u></p> <p>서울시 종로구 인사동5길 29</p> <p>☎ 02-721-5300</p> <p>www.fnpricing.com</p>
제5부 기타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			
1. 투자자의	자본시장과 금융	2) 의결권 행사방법	2) 의결권 행사방법

<p>권리에 관한 사항 가. 투자자 총회 등 (2) 투자자총회의 소집 및 의결권 행사방법</p>	<p>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법령 개정사항 반영</p>	<p>▪ 수익자총회는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과반수를 소유하는 수익자의 출석으로 성립되고,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과 발행된 수익증권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합니다.</p> <p>▪ 수익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. 이 경우 수익자는 서면에 의결권 행사의 내용을 기재하여 수익자총회일 전날까지 집합투자업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.</p> <p>3) 연기수익자총회</p> <p>▪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총회의 회의개시 예정시간에서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출석한 수익자가 소유한 수익증권의 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과반수에 미달하는 경우 수익자총회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.</p> <p>▪ 수익자총회가 연기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날부터 2주 이내에 연기된 수익자 총회(이하 "연기수익자총회"라 합니다)를 소집하여야 합니다. 이 경우 연기수익자 총회일 1주 전까지 연기수익자총회의 소집을 통지하여야 합니다.</p> <p>▪ 연기수익자총회에서는 회의개시</p>	<p>▪ 수익자총회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합니다. 다만, 이 법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5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습니다.</p> <p>▪ 수익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. 이 경우 수익자는 서면에 의결권 행사의 내용을 기재하여 수익자총회일 전날까지 집합투자업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수익자 총회에 출석한 수익자가 소유한 수익 증권 총좌수의 결의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의결권을 행사(이하 이 항에서 "간주 의결권행사"라 한다)한 것으로 봅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수익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의결권 행사에 관한 통지가 있었으나 의결권이 행사되지 아니하였을 것 2. 간주의결권행사의 방법이 집합투자규약에 기재되어 있을 것 3. 수익자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수익증권의 총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분의 1 이상일 것 4.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를 따를 것 <p>3) 연기수익자총회</p> <p>▪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총회의 결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수익자총회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.</p> <p>▪ 수익자총회가 연기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날부터 2주 이내에 연기된 수익자 총회(이하 "연기수익자총회"라 합니다)를 소집하여야 합니다. 이 경우 연기수익자 총회일 1주 전까지 연기수익자총회의 소집을 통지하여야 합니다.</p> <p>▪ 연기수익자총회에서는 출석한</p>
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	--

		<p>예정시각에서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출석한 수익자가 소유한 수익증권의 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과반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출석한 수익자의 수익증권의 총좌수로써 수익자총회가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. 이 경우 연기수익자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합니다.</p>	<p>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8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합니다. 다만, 법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분의 1이상의 수로 결의합니다.</p>
(3) 투자자총회 결의사항	<p>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법령 개정사항 반영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집합투자업자, 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,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▪ 신탁업자의 변경(합병·분할·분할합병, 법시행령 제216조에서 정한 사유로 변경되는 경우 제외) ▪ 신탁계약기간의 변경 ▪ 투자신탁의 종류의 변경,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, 집합투자업자의 변경, 환매 금지투자신탁으로의 변경, 환매대금 지급일의 연장 ▪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집합투자업자, 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,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▪ 신탁업자의 변경(합병·분할·분할합병, 법시행령 제216조에서 정한 사유로 변경되는 경우 제외) ▪ 신탁계약기간의 변경 (<u>투자신탁을 설정할 당시에 그 기간변경이 신탁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 제외</u>) ▪ <u>투자신탁의 합병(소규모 투자신탁의 합병 제외)</u> ▪ 투자신탁의 종류의 변경,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, 집합투자업자의 변경, 환매 금지투자신탁으로의 변경, 환매대금 지급일의 연장 ▪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
(4) 반대매수 청구권	<p>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법령 개정사항 반영</p>	<p><u>법 제188조제2항 각 호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신탁계약의 변경 또는 법 제193조 제2항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대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반대하는 수익자는 수익자총회 전에 해당 집합 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 그 수익자 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수익증권의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.</u></p>	<p><u>투자신탁의 수익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에게 수익증권의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.</u></p> <p><u>1. 법 제18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신탁 계약의 변경 또는 법 제193 조제2항에 따른 투자 신탁의 합병에 대한 수익자 총회의 결의에 반대(수익자총회 전 에 해당 집합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그 결의 에 반대하 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로 한정한다)하는 수익자가 그 수익자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</u></p> <p><u>2. 법 제19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반대하는 수익자가 대통령</u></p>

			<u>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</u>
3.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가. 정기보고서 (2) 자산운용보고서	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법령 개정사항 반영	[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아래의 경우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투자자에게 적용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] ▪ 투자자가 자산운용보고서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<u>서면으로</u> 표시한 경우	[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아래의 경우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투자자에게 적용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] ▪ 투자자가 자산운용보고서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<u>서면, 전화·전신·모사전송,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</u> 표시한 경우
(3) 집합투자재산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	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법령 개정사항 반영	▪ 합병, 영업의 양도·양수, 임원의 임면, 정관변경 등 경영권변경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: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▪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: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 내용 ▪ 의결권 공시대상 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: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구체적인 사유	▪ 합병, 영업의 양도·양수, 임원의 임면, 정관변경 등 경영권변경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: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<u>및 그 사유</u> ▪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: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 내용 <u>및 그 사유</u> ▪ 의결권 공시대상 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: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구체적인 사유

□ 변경대비표(집합투자계약)

항 목	정정사유	정 정 전	정 정 후
펀드명	펀드명 변경	현대 중국 으로 뺀 어나가는 대한민국 증권투자신탁1호[주식]	현대 튼튼 대한민국 증권투자신탁1호[주식]
제3조(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명칭 등)	펀드명 변경	①이 투자신탁은 증권투자신탁으로서, 투자신탁의 명칭은 "현대 중국 으로 뺀 어나가는 대한민국 증권투자신탁1호[주식]" 라 한다. ②, ③ <생략>	①이 투자신탁은 증권투자신탁으로서, 투자신탁의 명칭은 "현대 튼튼 대한민국 증권투자신탁1호[주식]"라 한다. ②, ③ <현행과 동일>
제17조(투자대상 자산 등)	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법령 개정사항 반영	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다음 각 호의 투자대상 및 투자방법으로 운용한다. 1. ~ 10. <생략> 11. 법시행령 제268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	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다음 각 호의 투자대상 및 투자방법으로 운용한다. 1. ~ 10. <생략> 11. 법시행령 제268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
제19조(운용 및 투자 제한)	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법령 개정사항 반영	2. 제1호가목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에 투자할 수 있다. 가., 나. <생략> 다.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의 시가총액이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시가총액 비중까지 투자하는 경우. 이 경우 시가총액비중은 <u>유가증권시장, 코스닥시장 또는 해외 증권시장별로</u> 매일의 그 지분증권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그 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종목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합한 금액	2. 제1호가목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에 투자할 수 있다. 가., 나. <생략> 다.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의 시가총액이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시가총액 비중까지 투자하는 경우. 이 경우 시가총액비중은 <u>거래소가 개설하는 증권시장별로</u> 매일의 그 지분증권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그 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종목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합한 금액

		의 총액을 합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1개월간 평균한 비율로 계산하며,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그 다음 1개월간 적용한다.	으로 나눈 비율을 1개월간 평균한 비율로 계산하며,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그 다음 1개월간 적용한다.
제22조(신탁업자의 업무제한 등)	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법령 개정사항 반영	<p>①, ② <생략></p> <p>③신탁업자는 신탁재산 중 증권, 그 밖에 법시행령 제268조제1항에 정하는 것을 자신의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집합투자기구 별로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하여야 한다.</p> <p>④~⑦ <생략></p>	<p>①, ② <현행과 동일></p> <p>③신탁업자는 신탁재산 중 증권, 그 밖에 법시행령 제268조제1항에 정하는 것을 자신의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집합투자기구 별로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하여야 한다. <u>다만, 해당 증권의 유통 가능성, 다른 법령에 따른 유통방법이 있는지 여부, 예탁의 실행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/u></p> <p>④~⑦ <현행과 동일></p>
제37조(수익자총회)	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법령 개정사항 반영	<p>①~⑤ <생략></p> <p>⑥수익자총회는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과반수를 소유하는 수익자의 출석으로 성립되며,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 과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 한다. 다만, 이 법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 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 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다.</p> <p>⑦수익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.</p> <p>⑧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</p>	<p>①~⑤ <현행과 동일></p> <p>⑥수익자총회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한다. 다만, 이 법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 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5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다.</p> <p>⑦수익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. <u>다만,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한 수익자가 소유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결의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의결권을 행사(이하 이 항에서 “간주의결권 행사”라 한다)한 것으로 본다.</u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수익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의결권 행사에 관한 통지가 있었으나 의결권이 행사되지 아니하였을 것 간주의결권행사의 방법이 집합투자규약에 기재되어 있을 것 수익자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수익증권의 총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분의 1 이상일 것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를 따를 것 <p>⑧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</p>

		<p>(제4항 후단에 따라 수익자총회를 소집하는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를 포함한다. 이하 이 항에서 같다)는 <u>수익자총회의 회의개시 예정시각에서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출석한 수익자가 소유한 수익증권의 좌수 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과반수에 미달하는 경우 수익자 총회를 연기할 수 있다.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날부터 2주 이내에 연기된 수익자총회(이하 “연기수익자총회”라 한다)를 소집 하여야 한다.</u></p> <p><u>⑨연기수익자총회의 회의개시 예정 시각에서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출석한 수익자가 소유한 수익증권 의 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 수의 과반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출석한 수익자의 수익증권의 총좌수로써 수익자총회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. 이 경우 연기 수익자 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제5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“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과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3분의 1 이상”은 “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 의 3분의 2 이상”으로 하고, “출석 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4분의 1 이상”은 “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”로 한다.</u></p> <p>⑩ <생략></p>	<p>(제4항 후단에 따라 수익자총회를 소집하는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를 포함한다. 이하 이 항에서 같다)는 <u>제6항에 따른 수익자총회의 결의가 이루어 지지 아니한 경우</u> 그 날부터 2주 이내에 연기된 수익자총회(이하 “연기수익자총회”라 한다)를 소집 하여야 한다.</p> <p><u>⑨연기수익자총회의 결의에 관하여는 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. 이 경우 “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 의 4분의 1 이상”은 “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8분의 1 이상” 으로 보고, “수익증권의 총좌수의 5분의 1 이상”은 “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분의 1 이상”으로 본다.</u></p> <p>⑩ <현행과 동일></p>
제47조(투자신탁의 합병)	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법령 개정사항 반영	<p>①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그 집합투자업자가 운영하는 다른 투자신탁을 흡수하는 방법 등으로 투자신탁을 합병할 수 있다.</p> <p>②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라 투자신탁을 합병하고자 하는 경우 법 제193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합병계획서를 작성하여 합병하는 각 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.</p>	<p>①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그 집합투자업자가 운영하는 다른 투자신탁을 흡수하는 방법 등으로 투자신탁을 합병할 수 있다.</p> <p>②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라 투자신탁을 합병하고자 하는 경우 법 제193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합병계획서를 작성하여 합병하는 각 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. <u>다만,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적은 소규모 투자 신탁의 합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.</u></p>
제38조(반대수익자의 매수청구권)	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법령 개정사항 반영	<p>①<u>법 제18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신탁계약의 변경 또는 법 제193조제2항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대한 수익자 총회의 결의에 반대하는 수익자는</u></p>	<p>①<u>투자신탁의 수익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에게 수익증권의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</u></p>

		<p>수익자총회 전에 해당 집합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는 그 수익자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수익증권의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.</p> <p>②~④ <생략></p>	<p>있다.</p> <p>1. 법 제18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신탁계약의 변경 또는 법 제193조제2항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대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반대(수익자총회 전에 해당 집합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로 한정한다)하는 수익자가 그 수익자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</p> <p>2. 법 제19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반대하는 수익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</p> <p>②~④ <현행과 동일></p>
<p>제50조(공시 및 보고서 등)</p>	<p>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법령 개정사항 반영</p>	<p>① <생략></p> <p>②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그 사유발생 후 지체 없이 제3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.</p> <p>1. 투자운용인력의 변경</p> <p>2. ~ 5. <생략></p> <p>③, ④ <생략></p> <p>⑤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최초 설정일부터 매3개월마다 법제88조에서 규정한 자산운용 보고서를 작성하여 수익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. 다만,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.</p> <p>1. 수익자가 자산운용보고서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한 경우</p> <p>2. 수익자가 보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평가금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</p> <p>⑥ <생략></p> <p>⑦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운용보고서, 자산보관·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판매회사를</p>	<p>① <현행과 동일></p> <p>②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그 사유발생 후 지체 없이 제3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.</p> <p>1.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사실과 변경된 투자운용인력의 운용경력 (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, 집합투자 재산의 규모와 수익률을 말한다)</p> <p>2. ~ 5. <현행과 동일></p> <p>③, ④ <생략></p> <p>⑤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최초 설정일부터 매3개월마다 법 제88조에서 규정한 자산운용 보고서를 작성하여 수익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. 다만,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.</p> <p>1. 수익자가 자산운용보고서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, 전화·전신·모사전송,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표시한 경우</p> <p>2. 수익자가 보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평가금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</p> <p>⑥ <생략></p> <p>⑦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운용보고서, 자산보관·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판매회사 또는</p>

		<p>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한다. 다만, 수익자 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89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,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.</p> <p>⑧~⑪ <생략></p>	<p><u>한국예탁결제원</u> 을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한다. 다만, 수익자 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89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,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.</p> <p>⑧~⑪ <현행과 동일></p>
--	--	--	---

□ 기 타 : 정정 후 원본파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.

